

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26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08. 23. 이정숙 의원 등 6인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8. 29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9. 10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김원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2)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7조)
- 3)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0조)
- 4) 가로등 및 보안등의 이설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5)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복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(안 제12조, 제13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43호
 - 예고기간: 2024. 8. 23.(금) ~ 2024. 8. 28.(수)[5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 ~ 제2조)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3조)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,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군수가 하며,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할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4조 ~ 제6조) 설치기준, 우선순위, 설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7조 ~ 제9조) 신청절차, 비용부담 등, 관리대장 및 표찰 등에 관한 사항으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10조 ~ 제13조) 점검 및 보수, 이설, 훼손시설의 복구,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